

#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9
----------	-----

제안연월일 : 2024. 9. .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기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
- 추진 필요성
  - 체험관 운영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체험관 설립 목적을 달성 필요

##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 위탁사무 내용

- 한강시원지 체험관(전시실, 다도체험실, 사무실) 관리
- 체험관 전시·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관리인원의 상시배치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제공

### ○ 위탁 범위

-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98

### ○ 규모

- 건축물 연면적 : 987.94m<sup>2</sup>(지하 1층, 지상 2층)

구분	층수	규모	용도
전시실	지하1층	784.03m <sup>2</sup>	우통수관련 테마별 전시관
사무실	지상1층	65.57m <sup>2</sup>	한강시원지 체험관 사무실
다도체험관	지상2층	138.34m <sup>2</sup>	전통다도 무료 체험

- 대지면적 : 4,991m<sup>2</sup>

###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도 예산액 참고하여, 2025년 당초예산 300,000천원 계상
  - 수탁자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액 확정

아. 운영현황

- 위탁현황
  - 수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수탁기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 위탁비용 : 319,550천원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기준

<예산집행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22	2023	2024(9월 기준)
집행액	208,000	341,400	246,766

- 운영인력 : 4명
- 운영내용
  - 우통수 생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전시관 및 다도체험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경우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명
3. 민간위탁기간

**제11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전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삭 제 <2023. 6. 30.>

⑥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전 회의고지·공개·회의록작성·의견진술, 위원의 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⑩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계약의 취소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10. 그 밖에 군수가 계약의 해석, 시설의 운영 등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민간위탁기간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